



II. 각론

01. 살인의 죄

01 보통살인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O

예비·음모

살인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고의

사람

살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종합하여 판단
(경위·동기·흉기 준비, 종류·공격 부위, 반복성·결과발생 가능성 등)

고의

가능·위험에 대한 인식·예견 — 반드시 살해목적·살해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님
미필적(불확정적) 인식·예견도 가능 — 확정적 고의에 한정 X

사람

(객체)

살아 있는 사람 — 태아 => 낙태죄의 객체
— 사체 => 사체유기·손괴죄의 객체
시기·분만 개시시(진통설)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때
— 제왕절개수술 가능시 => 분만의 시기 X

살해

(행위)

수단·방법 제한 X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 — 미성년자 감금 후 그 상태 유지 => 살인죄 성립 가능
물에 빠진 조카를 방지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 살인죄 성립 가능

죄수·타죄와의 관계

구분	결론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	별도로 사체유기죄(불가벌적 사후행위X)
甲이 A를 살해함에 있어 나중에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A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살인죄 O, 사체은닉죄 X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포괄하여 살인 기수죄 일죄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	살인죄(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치와 자식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경합범(포괄일죄 X)

살인죄 O

-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91도2174)
-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2000도2231)
-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자를 폭행하고1 특히 급소인 목을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2000도5590)
-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2001도6425)(강도살인죄 O, 강도치사죄 X)
-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얹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조카에 대한 살인죄)(83도2813).
- 교통사고를 가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은폐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2001도4392)
- 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 온 경우(甲은 살인미수죄)(94도2511)
-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사망한 경우(96도3364)
- 가로 15cm 세로 16cm 길이 15301 ; 무게 7kg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98도980)
- 범행현장에 있던 생선회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가슴 쪽으로 향하여 깊이 찔러 1시간 내에 사망케 한 경우(94도2511)
-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cm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87도2195)
-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탈취해 운전하여 시위진압 중인 기동대원을 향해 돌진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88도692)

살인죄 X

- 적재된 입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4290형상56)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한 경우(84도2361 포괄하여 상해치사죄 일죄)

01. 살인의 죄

02 존속살해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예비·음모

부진정신분범 :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 가중

고의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법률상 개념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 해당 X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X

직계존속 { 법률(민법)상 개념 — 입양관계 => 해당 O — 양자가 양부모 살해 => 존속살해죄
사실상 부자관계 (혼인 외 출생자) => 해당 X — 사실상 개념 X

— 혼인 외 출생자가 : 생모 살해 => 존속살인죄

— 혼인 외 출생자가 : 인지 전 부 살해 => 보통살인죄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 : 실부모 살해 => 존속살해죄

처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행위객체가 존속일 때 가중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존속가중 O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존속학대 · 유기죄 (유기 · 학대치사상죄), 존속체포 · 감금죄 (중체포 · 감금죄, 체포 · 감금치사상죄), 존속협박죄 등

존속가중 X

과실치사상죄, 명예훼손죄, 약취 · 유인죄

존속살인죄 O

- 생부가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호적신고한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무효이나 인지신고로서는 유효하므로 생부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 (71다1983).
- 甲女는 남편과 공동으로 乙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여 오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성인이 된 乙이 甲女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 (2007도8333)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公示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乙은 甲의 양자임).

존속살인죄 X

- 자기집 문 앞에 버려진 아이 (피고인)를 주어다 기르고 남편과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여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81도2466)

03 영아살해죄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예비·음모 X

부진정신분범 :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 감경

고의

직계존속

치욕 은폐·양육 불가 예상·특히 참작 동기

분만중·분만직후

영아 살해

직계존속

(주체)

법률상 직계존속

사실상 직계존속 X

사실상 동거관계 남자가 영아 살해 => 보통살인죄 O, 영아살인죄 X

영아

(객체)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 태아 X

01. 살인의 죄

04 촉탁·승낙살인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예비·음모 X

05 자살교사·방조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수범

예비·음모 X

고의

자살 교사

자살 방조

고의 행위 존재 + 인식 — 방조행위 :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자살 교사 자살 의사 없는 타인에 대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행위

자살 방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살 용이하게 하여 주는 행위

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미수범

예비·음모

07 살인예비·음모죄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음모 처벌 X

영아살해 (제251조), 촉탁·승낙살인 (제252조 제1항), 자살교사·방조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방조죄 O

-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 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 O) (2010도2328)

자살교사·방조죄 X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005도1373)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 X)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냐 복종하는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 O, 자살교사죄 X) (86도2395)

살인예비·음모죄 O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2009도7150)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살인예비죄)

살인예비·음모죄 X

- 살해하려고 낚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여 살인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살인 예비 X, 살인 미수 O) (살해 착수 O) (85도2773)

-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292형상387)

02. 상해와 폭행의 죄

01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O

상습범 (제264조)

반의사불벌죄 X

고의

사람의 신체

상해

고의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
상해를 가할 의사 불필요

사람의 신체
(객체)

타인의 신체 [자상 => 본죄 성립 X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자상 => 처벌
태아 => 객체 X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임산부에 대한 상해 X

상해

(행위)

신체의 완전성 훼손 or 생리적 기능 장애 초래
종합적 고려 — 구체적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 고려
객관적·일률적 판단 X

죄수·타죄와의 관계

구분	결론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실체적 경합범 (각각 별개의 상해죄) (상상적 경합 X)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협박과 상해	상해죄 (협박죄는 상해죄에 포함)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을 물어뜯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공무집행방해치상죄 X)

02 존속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O

상습범 (제264조)

살인죄 O

- 오랜 시간(4시간 30분 동안) 폭행 ·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96도2529) (외부적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음)
- 미성년자의 추행행위로 인해 외음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96도1395)
- 강제추행과정에서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그 압통 · 종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99도4794) (강간과정에서 물리적 충동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2005도1039)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 (69도161)
-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는 부녀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 (92도2345)
- 성경험을 가진 여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강간으로 파열된 경우 (94도1351)
-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91도1832)
-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a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98도3732)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상해)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 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2017도3196)

살인죄 X

-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 X) (99도3099)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초래 X)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5도3832)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 x).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 (2003도2313) (강도상해죄 X)
- 강간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 (87도1880)
- 자동차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을 입은 경우 (99도3910)
-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 (85도2042)

존속살인죄 X

-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한 경우 (친자관계 X) (83도996)

3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II(뇌물 등)

구분		행위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제3자뇌물제공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요구·약속
수뢰 후 부정청사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후 부정행위
부정청사 후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부정행위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요구·약속
사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 후(퇴직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알선수뢰죄	공무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02 수뢰죄·사전수뢰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

고의
(과실X)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요구·약속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공무원

공무원 O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하는 공법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

공무원 X —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사전수뢰죄)

공직취임의 개연성 포함

합격하여 발령 대기하고 있는자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공직취임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개연성을 갖춘 자

뇌물 수수·요구·약속

수수

뇌물 취득

사실상 처분권 획득
소유권 취득 필요 X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공여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

공여자가 비용 등 부담을 위해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사자대리인에 의한 수수 가능

→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제3자뇌물제공죄 X)가 성립한다(공무원
의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요구

약속 — 양당사자의 뇌물수수 합의

방법에 제한 X — 명시적일 필요 없음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

- 나중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2013도11357)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2012도5692)
- 조합임원 지위를 상실 또는 임기 만료된 조합임원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 직무수행을 수행한 경우(2015도15798)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불해당

- 서울시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2011도12639)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2010도14394)